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3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황 희 · 박수현 · 이용선
문진석 · 한민수 · 손명수
박용갑 · 이소영 · 신영대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진화 대원이 투입되었으나 산불 진화 도중 역풍으로 고립되어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진화 작업은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무원인 이들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제1절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산불현장 투입)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불현장에 투입할 경우 풍향·풍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인정에 대한 특례) 산불예방

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 작업으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 ② (생략) <u><신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략) <u><신설></u>	제37조의2(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u>산불현장 투입</u>) <u>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u>산불현장에 투입할 경우 풍향·풍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u></u>
<u><신설></u>	제67조의2(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인정에 대한 특례) <u>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u>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u></u>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
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
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
부상공무원으로 본다.